

시민생활체육관 탁구 프로그램 도급강사 공개모집 공고

시민생활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우수 강사진을 공개 모집하오니
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9월 30일

창원시설공단 시민생활체육관팀장

I 모집인원 : 1명

● 프로그램 : 탁구

종 목	모집 인원	강 습 일	운 영 시 간	배분율 (공단:강사)	자 격 요 건
탁 구	1명	월~일	09:00~22:00	20 : 80	▶ 전문·생활스포츠(탁구 2급)이상 소지자 또는 전국대회 이상 3위 이상 입상자(해당 종목 지도 경력 6개월 이상인 자

※ 탁구: 보조강사 1명 이상 필수 / 보조강사 자격증 필수
※ 탁구 강습반: 월·수·금 11개반, 화·목 11개반, 토(월 4회) 2개반

II 기본(공통)자격

●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자

- 해당 종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해당 경력 6개월 이상인 자
- 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의 해당자는 선발할 수 없음
-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급강사로 계약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Ⅲ 전형일정 및 방법

● 계약기간: 2026. 11. 1. ~ 12. 31.(2개월)

- ※ 1. 공사 및 휴장 등으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시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2. 강사료 지급: 매월 등록한 자의 총 강습료 수입금 중 환불금을 제외하고 창원시가 적용하는 감면금액 적용 후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배분하여 강사의 수입금 중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.

● 전형일정

- ▶ 모집공고: 2026. 9. 30.(수) ~ 10. 13.(화)
- ▶ 모집절차

구분	원서접수기간	서류(적격) 심사 발표	면 접 심 사	합격자 발 표	계약체결
일정	10. 6.(화) 09시~ 10. 13.(화) 18시	10. 16.(금)	10. 19.(월)	10. 20.(화)	10. 31.한
방법	방문접수(우편불가) (토, 일 접수 불가)	개별통보	시민생활체육관 1층 회의실	개별통보	시설 내방

▶ 접 수 처: 시민생활체육관 1층 사무실(종합안내실 옆)

▶ 제출서류(붙임서식 참조)

① 응시원서 / 자기소개서 / 직무수행 계획서 /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/ 자격증(사
본)

②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(자필작성) / 공정 모집절차 확인서(자필작성)

③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(자필작성)

④ 경력증명서: 실무경력은 공고일 이전으로 계산하며, 반드시 경력증명서상

근무처, 직위, 직급, 근무기간,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.

⑤ 주민등록초본(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)

⑥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증명서류 원본(해당자에 한함)

● **전형방법:** 응시원서 접수 → 서류전형 → 면접심사 → 최종 합격자 선정

▶ 서류전형: 기본자격, 경력, 자격증 등 제출서류 적격성 심사

▶ 면접심사(블라인드 심사)

구분	소계	공기업 이해	프로그램 이해	책임감/성실성	인터뷰 자세
면접	100점	25점	25점	25점	25점

● 최종 합격자 결정

- ▶ 면접시험(면접위원 점수 산술평균) 결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- ▶ 동점자 발생 시 아래와 각 항의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①	취업지원대상자
②	사회적약자(북한이탈주민, 장애인)
③	『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경력단절여성
④	면접평가 우수자(‘상’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, ‘상’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‘중’의 개수가 많은 사람)
⑤	청년의무 고용대상자
⑥	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

※ 최종합격자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, 중도계약해지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
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

IV

공 통 사 항

가. 합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 조치

- ▶ (합격취소) 응시원서 기재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,
공단 도급강사 운영계약 지침 제12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▶ (응시제한)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강사 모집에 지원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
 - 모집 도중이라도 모집 절차 진행을 중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 - 절차 중지일 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 이상 응시 제한

나. 제출된 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접수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
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선발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~

18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다. 해당 선발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라. 예비합격자는 모집인원 대비 차점자 1명을 최종 합격자가 계약 중 사정에

의하여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가 계약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.

마.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본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.

바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생활체육관 사무실(055-712-0737)로 문의 바랍니다.